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재무과-22492
등록일자	2015.8.26.
결재일자	2015.8.2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지출팀장	재무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구청장
권해주	김애영	김병희	이창훈	주윤중	08/27 신연희
협조자	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				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계획

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- 법제처 발굴 규제개선 과제

주요 개정 내용

- 상위법령에 따라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
 -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의 참여 규정 신설 등
-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던 규칙은 조례에 통합후 폐지

2015. 8. .

강 남 구
(재 무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법제처 발굴, 규제개선 과제(기획예산과-17836,2014.11.24.)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없음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전공무원
분야 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0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부패영향평가(2015.4.27.) • 성별영향분석평가(2015.4.20.)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해당없음
전문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기획예산과 법제팀 심사(2015.8.26.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계획

상위법령에 맞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I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II 개정 대상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: 일부개정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: 폐지

III 개정 사유

- 법제처 자치구 조례 자율 정비 지원 검토결과 개선 권고
 - 규칙에 규정되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례로 신설 개정
 - 관련 조례 :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
 - 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한다는 참여 규정 신설
 - 관련 조례 : 제8조
 - 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□ 조례에서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행규칙 준용 규정 정비
 - 관련 조례 : 제5조 개정 및 제6조 삭제

IV 주요 개정 사항

□ 조례 주요 정비 내용

현 조례 규정	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)	시행규칙 준용규정 정비
제6조(준용)	시행규칙 준용규정 삭제
제7조(장부의 비치)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
제8조(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
제9조(위원의 임기)	민간전문가 참여규정에 따라 임기 신설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	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
제12조(간사 등)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
제13조(회의록)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
제14조(수당)	민간전문가 참여규정에 따라 수당 신설
별지 제1호 서식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
별지 제2호 서식	현규칙 조항으로 규칙→조례 (지방재정관리시스템 양식에 따라 정비)

□ **규칙 조문 폐지·통합 내용**

현 조례 시행규칙 규정	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으로 통합후 폐지
제1조(목적)	조례개정안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
제2조(기금심의위원회 설치)	
제3조(심의사항)	
제4조(회의운영)	
제5조(회의록)	
제6조(장부의 비치)	
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	조례개정안 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

V

추진일정

일 자	추진 내용	비 고
2015. 4.16. ~ 4.27.	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 - 원안동의	첨부3
2015. 4.16. ~ 4.20.	성별영향분석평가(보육지원과) - 원안동의	첨부4
2015. 8.25. ~ 8.26.	입안 심사(기획예산과)	첨부1,2
2015. 8.28. ~ 9.16.	입법예고(20일)	
2015. 9월 중	조례규칙심의회 상정	
2015. 9월 중	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
2015. 10월 중	구의회 상정	
2015. 11월 중	조례 및 폐지규칙 공포	

VI

행정사항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동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동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- 입안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(기획예산과)
- 자치법규(조례) 공포 및 시행(기획예산과)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3.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각1부. 끝.

관련법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